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73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3재정비촉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35,1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관악구 호암로 494, 1층)
 - 나. 조합장 신태산(관악구 약수암길 9)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7.09.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및 조합에 비치)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가. 대지면적 : 35,140㎡
 - 나. 건폐율 : 23.29%
 - 다. 용적률 : 235.90%
 - 라. 건축물 최고높이 : 49m
 - 마.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바. 연면적(지상) : 52,589.7170㎡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 지하4층/지상7~17층, 아파트 8개동 571세대

공급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30	44	51	59	74	84
계		8	571	42	42	34	205	33	215
분 양	아파트	8	473			34	191	33	215
임 대	아파트		98	42	42		14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 사업

시행자 설치 후 관악구로 무상귀속

구분	규 모					위 치	
	등급	류별	폭원(㎡)	연장(㎡)	면적(㎡)	기 점	종 점
도로	중로	1	20~24	5,500 (165)	815	신림동	시흥동계
	중로	3	13	85	1,105	신림동316-8	신림동315-10
	소로	2	8	37	296	신림동산69-17	신림동산69-2
	소로	3	6	314	1,884	신림동315-10	신림동316-114
공원	소 계 (①)						
	신우공원(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울곡공원(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약수공원(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합계	소 계 (②)						
	합계 (①+②)					11,547	

※ ()는 구역 내 연장

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대상)

종 류 (지목)	관리청	소재지	이용 현황	저축 국·공유토지(㎡)			비고
				1필지 공부상	편 면 입 적	정비기반 시 설	
		합계		8,891	8,412	6,807	
천	국토교통부	317-4	도로	697	343	30	
도		산69-33	도로	308	293	32	
도		산71-7	도로	191	191	75	
도		산73-13	도로	51	51	34	
도		산73-15	도로	47	47	47	
도		산73-16	공원	114	114	114	
임	기획재정부	산69-18	도로	717	717	221	
도	관악구	315-3	도로	439	439	369	
도		316-1	도로	4,552	4,552	4,224	
공		316-95	공원	1,680	1,570	1,570	
공		316-141	도로	95	95	91	

※ 관련부서(기관)협의 회신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잔여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유상매입대상임.

10.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라.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마.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1. 기타 관계도서 : 생략[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82)에 비치]. 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7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